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유영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6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1.

발 의 자 : 유영하 · 박덕흠 · 김재섭
김용태 · 유용원 · 이성권
안철수 · 임종득 · 김대식
김상훈 · 박대출 · 조승환
서천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제안이유

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·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·귀촌 지원시설,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재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함께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. 202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약 32만 명으로, 10년 전인 2016년 약 40만 명보다 8만 명 감소된 상황임.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에 학교 통·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
한편,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, 체험학습시설, 문화·평생교육시설 등 교육·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 학교 통·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육·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

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·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(안 제5조제5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663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제2호 중 “귀농어·귀촌 지원시설”을 “교육용시설, 문화시설, 귀농어·귀촌 지원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1663호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(대부 등에 관한 특례) ① ~ ④ (생략) ⑤ 시·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·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<u>귀농어·귀촌 지원시설</u>, <u>통합지원시설</u> 또는 <u>주민공동이용시설</u>로 사용하려는 경우 3. ~ 6. (생략)	법률 제21663호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(대부 등에 관한 특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<u>교육용시설, 문화시설, 귀농어·귀촌 지원시설</u>----- ----- ----- 3. ~ 6. (현행과 같음)